

제19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 
(제2차 본회의)

2013. 7. 25.(목) 10:00~

# 조례안 심사 보고서

산업건설위원회

## 【 목 차 】

의 안 번 호	건 명	페이지
54	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	2
55	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안	5
56	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	8
57	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1
58	거창군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3
59	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6

# 〔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〕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7. 2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7. 2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7. 12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 가. 제안이유

- 경제성과 안정성에서 우수한 도시가스의 조기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혜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내용

#### (1) 주요대상 및 범위를 정함 (안 제5조)

- 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포함함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
- 본관, 정압시설 설치비,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

#### (2) 위원회 설치 및 구성, 기능 운영에 관하여 정함 (안 제6조~ 제8조)

- 보조사업 선정·조정 및 협의 등을 위하여 10명 이내 구성

#### (3) 보조사업 수요조사서 및 중·장기계획서 작성 제출에 관하여 정함 (안 제9조)

#### (4) 보조사업 선정에 관하여 정함(안 제10조)

(5) 보조금의 교부 방법에 관하여 정함(안 제11조 ~ 제14조)

(6) 보조사업의 감독 및 제재에 관하여 정함 (안 제15조.제16조)

### **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**

가. 이 조례안은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도시가스의 조기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들의 연료비 부담해소나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서

나.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,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 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### **5. 토론 요지 : 해당없음**

### **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**

○ 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 구성위원 변경

- 당초 : 군의회 의장 추천 군의원 => 삭제

- 추가 :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※ 대비표 참조

### **7. 심사 결과 : 수정가결**

### **8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**

### **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**

## 상정 및 수정 안 대비표

상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당연직 위원은 도시가스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</p> <p><u>1. 군의회 의장 추천 군의원</u></p> <p><u>2. 도시가스 관련 유관기관 등의 부서장</u></p> <p><u>3.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</u></p> <p><u>4. 시민단체 대표 등</u></p> <p><u>5. 도시가스사업자의 소속 임원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6조(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)</p> <p>① ~ ② (상정안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1.-----</u></p> <p><u>2.-----</u></p> <p><u>3.-----</u></p> <p><u>4.-----</u></p> <p><u>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</p>

# 〔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안 〕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7. 2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7. 2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7. 12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 가. 제안이유

- 신·재생에너지 보급 및 녹색건축물 확대에 필요한 사항,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군민 복리향상은 물론 에너지자립도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(1) 에너지 관련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함 (안 제3조)
- (2)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계획에 관하여 정함 (안 제4조)
- (3) 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에 관하여 정함(안 제5조~ 제9조)
- (4) 공공·건물·수송부문 에너지 시책에 관하여 정함(안 제10조)
- (5)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관하여 정함(안 제12조)
- (6) 녹색건축물 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정함 (안 제14조)
- (7) 에너지절약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정함(안 제16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이 조례안은 신·재생에너지 보급 및 녹색건축물 확대에 필요한 사항,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군민 복리향상은 물론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서
- 나.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,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 요지 : 해당없음

### 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- 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 구성위원 변경
  - 당초 : 군의회 의원 => 삭제
- ※ 대비표 참조

### 7. 심사 결과 : 수정가결

### 8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###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## 상정 및 수정 안 대비표

상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⑤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, 에너지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p> <p><u>1. 군 의회 의원</u></p> <p><u>2. 에너지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협회 관계자</u></p> <p><u>3. 군민 또는 지역주민단체 관계자</u></p> <p><u>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</p>	<p>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⑤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⑥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1. 에너지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협회 관계자</u></p> <p><u>2. 군민 또는 지역주민단체 관계자</u></p> <p><u>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</p>

# 〔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〕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7. 2.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7. 2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7. 12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, 같은법 시행령 「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가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옥외광고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(1)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추가 및 간판의 외국어 병기 등을 규정함 (안 제6조, 제12조)
  - 조례에서 추가로 정하는 건물의 용도로 판매시설, 숙박시설 예시
  - '11.3.29 법률 개정으로 관광지, 관광단지 등에 대해서만 한글전용 간판에 외국어를 병기 할 수 있는 근거 신설
- (2) 자율관리 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(안 제7조)
- (3)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. 운영에 필요한 사항(안 제8조)

- (4)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.운영에 필요한 사항(안 제9조)
- (5)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을 하는 근거 신설 (안 제25조)
- (6)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(안 제26조)
  - 광고물 전수조사 후 양성화 광고물, 법령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편입된 경우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
  -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이 조례안은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같은 법 시행령, 「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옥외광고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
- 나.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,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 요지 : 해당없음

### 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- 주민협의회 구성위원 변경
  - 당초 : 군의회 의원 => 삭제
  - 추가 : 주민대표자
- ※ 대비표 참조

### 7. 심사 결과 : 수정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상정 및 수정 안 대비표

상 정 안	수 정 안
<p>제8조(주민협회의회의 운영) 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1. 주민협회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                      가.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<u>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·지상권자·임차권자</u>                      나. 군민단체 및 옥외광고·디자인 관련 전문가  <u>다. 해당 자율관리구역을 지역선거구로 하는 군의회 의원</u>                      2. ~ 7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③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④ (생략)</p>	<p>제8조(주민협회의회의 운영) ① (상정안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 (상정안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1.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가.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<u>토지나 건물의 소유자·지상권자·임차권자 또는 주민대표자</u>                      나.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<u>&lt;삭 제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2. ~ 7. (상정안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③ (상정안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④ (상정안과 같음)</p>

#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7. 2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7. 2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7. 12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 가. 제안이유

- 옥내 급수설비 노후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도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급수관 개량(갱생 및 교체) 공사비를 지원하고,
- 각종 행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전부 감면하며,
- 상수도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선납 조항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·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률용어 정비를 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(1) 급수공사 신청 시 설계 수수료 납부 조항 삭제 (안 제6조)
  - 설계 수수료를 급수공사비 산출시 포함시켜 함께 납부
- (2)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을 위한 마을공동이용시설 수도요금 전부 감면 (안 제37조)
- (3) 옥내 노후 급수설비 갱생 및 교체비용지원대상을 정함(안 제40조)

- 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, 사회복지시설, 단독·공동주택 (100제곱미터 이하),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
- (4) 현행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·보완(안 제13조, 제18조, 별표5)
  - 급수도용 등 부정행위 사전 차단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 (30만원 ⇒ 50만원)
- (5)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 정비 (안제4조, 제25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이 조례안은 읍내 급수설비 노후로 먹는 물 수질기준이 미흡한 급수관 개량(갱생 및 교체) 공사비 지원과 상수원보호구역주민들을 위해 마을공동이용시설에 수도요금 전부 감면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제도의 미비점 개선·보완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
- 나.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,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# 거창군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7. 2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7. 2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7. 12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 가. 제안이유

-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위탁관리 시 위탁기간 연장조항 등을 삭제하여 위탁가능한 모든 업체에 기회를 제공
-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전면 위탁 관리함에 따라 읍·면장이 실시하던 시설 관리 및 점검 의무사항을 축소
- 「수도법」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관련지침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를 순화·정비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(1)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위탁관리 시 위탁기간 연장조항 삭제 (안 제22조)
- (2)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전면 위탁관리에 따른 읍·면장의 시설 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일부 축소
  - 관리자 및 해당 읍·면장 → 관리자(안 제4조, 제8조)
  - 읍·면장 → 관리자(안 제7조)

- (3) 「수도법」 등의 개정에 따라 법률조문, 환경부 조례 개정 요청사항 반영 및 관련지침 등에 의한 용어 정비
- 「수도법」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  
→ 「수도법」 제47조제2항 및 제55조 제2항(안 제1조)
  - 「수도법」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(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23조의2)  
→ 「수도법」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(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25조)  
(안 제6조)
  - 마을 신규입주세대에 수도설치 관련 입회비(마을발전기금) 요구 금지 규정 신설(안 제14조)
  -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, 마을상수도 → 소규모수도 시설(안제2조 ~제5조, 제7조, 제9조~제14조, 제17조, 제18조, 제21조, 제22조)
- (4)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 정비  
(안 제1조~제6조, 제8조, 제9조, 제11조~제17조, 제19조, 제21조~제23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이 조례안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위탁관리 시 위탁기간 연장조항 삭제 및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전면 위탁관리에 따른 읍·면장의 시설 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일부 축소하는 등 현행 운영제도의 미비점 개선·보완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
- 나.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,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 요지 : 해당없음

**6. 수정안 요지** : 해당없음

**7. 심사 결과** : 원안가결

**8. 소수의견 요지** : 해당없음

**9. 기타 필요한 사항** : 해당없음

#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7. 2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7. 2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7. 12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수도법」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수돗물 수질검사기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(1) 개정된 「수도법」에 맞게 수돗물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반영함
  - 기능 : 수돗물 정기검사 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
  - 위원자격 : 수도관련 업무담당 소속공무원, 수도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(안 제3조)
- (2) 수돗물 수질검사기관 등 수질검사 관련 조항 정비함(안 제8조)
  - 수도사업소 ⇒ 상하수도사업소
  -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⇒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
- (3)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 정비함  
(안 제1조, 제3조, 제6조, 제9조, 제10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이 조례안은 「수도법」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수돗물평가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수돗물 수질검사 기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
- 나.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,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